

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■약관명 : 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

■개정 시행일 : 2024년 3월 29일 (금)

■기존 가입 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 여부: 적용

■주요 개정 내용 : 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」 정의한 사기이용계좌 제재 강화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<b>제 1 조 ~ 제 4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제 5 조 거래제한</b> ① ~ 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 <u>&lt;신설&gt; 등의</u> 금융거래를 제한할수 있다.</p> <p><b>제 6 조 ~ 제 14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(<u>2016.12.30 개정</u>)</p> <p>제1조 ~ 제2조 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2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생략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<b>제 1 조 ~ 제 4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제 5 조 거래제한</b> ① ~ ② &lt;좌동&gt;</p> <p>③ 통장이 '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환급에 관한 특별법'에서 정의한 사기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, 통장명의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현금카드 발급, <u>해당 통장의 인출·이체한도 축소 등</u> 금융거래를 제한할수 있다.</p> <p><b>제 6 조 ~ 제 14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1&gt;</p> <p>제1조 ~ 제2조 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부칙 2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&lt;좌동&gt;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부칙 3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이 약관은 2024.03.29 부터 적용합니다.</u></p>	<p>국무조정실 한도계좌 개선 권고사항 반영</p> <p>시행일 추가 (이하 동일)</p>